

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20.3.12.(목) 15:00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문석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이상정 의원 등 6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0년 3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0년 3월 6일

3. 제안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지사 및 관련 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는 도민의 책무 규정(안 제5조)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교육 추진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등(안 제6조)

- 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 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안 제8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도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정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계 그리고 제정 절차 등은 적절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함.